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99-520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충청남도 천안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 거주)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가구의무기간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민간택지

### 1 공급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1.03.(금)	2025.01.06.(월)	2025.01.07.(화)	2025.01.13.(월)	2025.01.15.(수) ~ 2025.01.19.(일)	2025.01.24.(금) ~ 2025.01.26.(일)
방법	• (PC·모바일) 청약오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오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오픈	• (PC·모바일) 청약오픈	• 사업주체 견본주택(10:00 ~ 16:00)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81)	

### 2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동주택과 - 23969호(2024.12.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393-1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6~29층 6개동 총 4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05세대(기관추천 41세대, 다자녀가구 41세대, 신혼부부 74세대, 노부모부양 12세대, 생애최초 37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7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공급대상(민영주택)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 000726	01	64.9286	64	64.9286	23.3312	88.2598	46.2556	134.5154	41.0096	88	8	8	16	2	8	42	46	4
	02	84.9972A	84A	84.9972	28.5932	60.5526	174.1430	53.6851	248	25	25	44	8	22	124	10		
	03	84.9556B	84B	84.9556	28.4746	113.4302	60.5229	173.9531	53.6588	80	8	8	14	2	7	39	41	3
합 계										416	41	41	74	12	37	205	211	17

###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 수	층구분	해당 세대 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일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5.07.10	2025.12.10	2026.04.10	2026.08.10	2027.02.10	2027.07.10	2027.07.10							
64	102동 1,2호 105동 1,2호	88						2층	4	63,181,204	291,818,796	355,000,000	10,000,000	2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06,500,000			
								3층	4	63,181,204	301,818,796	365,000,000	10,000,000	2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109,500,000	
								4층	4	63,181,204	311,818,796	375,000,000	10,000,000	2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112,500,000	
								5~9층	20	63,181,204	316,818,796	380,000,000	10,000,000	2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10~19층	36	63,181,204	321,818,796	385,000,000	10,000,000	2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84A	101동 1,2,3,5호 103동 1,2호 104동 2,4호 106동 1,2호	248						2층	10	82,709,706	382,290,294	465,000,000	10,000,000	3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139,500,000			
								3층	10	82,709,706	387,290,294	470,000,000	10,000,000	3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4층	10	82,709,706	397,290,294	480,000,000	10,000,000	3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44,000,000		
								5~9층	50	82,709,706	402,290,294	485,000,000	10,000,000	3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45,500,000		
								10~19층	99	82,709,706	407,290,294	490,000,000	10,000,000	3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47,000,000	
84B	101동 4호 104동 1,3호	80						2층	3	82,669,225	372,330,775	455,000,000	10,000,000	3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36,500,000			
								3층	3	82,669,225	382,330,775	465,000,000	10,000,000	3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139,500,000		
								4층	3	82,669,225	392,330,775	475,000,000	10,000,000	3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42,500,000		
								5~9층	15	82,669,225	397,330,775	480,000,000	10,000,000	3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44,000,000		
								10~19층	30	82,669,225	402,330,775	485,000,000	10,000,000	3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45,500,000	
	20층이상	26						20층이상	26	82,669,225	407,330,775	490,000,000	10,000,000	3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47,000,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64	14,000,000	1,400,000	12,600,000	
84A	19,500,000	1,950,000	17,550,000	
84B	17,000,000	1,700,000	15,300,000	

### ■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2664-3613	광문개발주식회사
발코니 확장 공사비	우협은행	1010-2664-3632	광문개발주식회사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지가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지는 않습니다.

### 3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li> <li>※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연연연월월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연연연월월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연연연월월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를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th> <th>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3-1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공인 : 국군복합단지 복지사업운영과</li> <li>■ 장애인 :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li> <li>■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충남동부보훈처 복지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li> </ul>

### 3-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li>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 3-3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7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li> <li>※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치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 3-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li> <li>-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li> <li>■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 3-5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li>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li>■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li>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님)로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li>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li> <li>*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li> <li>*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li> <li>*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li> <li>■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li></ul>